



##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 문 허튼 소문으로 비즈니스 운영 훼방놓을 경우 대책은

〈문〉 조그마한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개 월전 잘 알고 지내오던 A와 금전문제로 싸웠는데 그 때 A가 마켓 손님들에게 저희 가게가 계산서를 찍을 때 숫자를 더 보태서 찍는다고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그냥 화감에 하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근래 몇몇 단골 손님이 A에게서 저희 마켓이 계산서에 실제 매상 보다 숫자를 더해서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 2개 월간 매상이 평균보다 저조했는데 A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A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A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가 귀하의 마켓이 계산서에 숫자를 보태서 찍는다는 얘기를 귀하기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을 경우 그러한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리면 귀하는 A를 상대

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켓이라는 비즈니스 성격을 고려할 때 손님이 구매하는 물건의 가짓수가 보통 두 세 가지를 넘고 또한 손님이 구매시 일일이 물건의 가짓수와 가격을 맞추어 보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업주의 정확한 계산처리가 손님이 귀하의 마켓을 계속 애용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귀하의 비즈니스 이익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실무근인 얘기를 귀하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구두로 전했다면 명예훼손 중에서도 구두비난(Slander)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A의 행위로 인해 귀하의 마켓이 손님을 잃고 매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A의 행위가 귀하에 대한 원한 혹은 악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할 경우 벌금에 해당하는 응징적 피해보상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이혼하면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도 청구할 수 있나

〈문〉 저는 40대 주부로 12·10·6학년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수속 중인데 아이들은 모두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들이 연달아 대학을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세 아이의 대학학비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남편은 전문직을 갖고 있으며 수입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대학학비를 남편이 내도록 입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현행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자녀부양 의무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 상관 없이 이혼 시 양 당사자간에 한 쪽 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녀의 대학학비나 생활비를 보조하겠다고 합의할 경우 이러한 합의를 반영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합의서를 이혼판결문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일단 법원이 합의내용을 판결문 일부로 채택하면 합의서 내용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대학학비 보조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남편의 재력을 강조해 남편이 자녀들의 대학학비를 보조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하셔야 하며 판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익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 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 문 동거중 출산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

〈문〉 저는 20대 후반의 미혼녀로서 한 미혼남과 동거중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우선 아이부터 놓아 키우고 후에 결혼하기로 그 남자와 합의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딸을 낳고 계속 살다 정식 결혼식은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아빠와 일년전 헤어졌고 제가 3살된 딸을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이 아빠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답〉 물론 있습니다. 귀하는 자녀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가정법원에 친자획립소송(Paternity Action)을 제기해야합니다. 친자획립소송이란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그가 귀하의 아이의 생부임을 증명해 상대방과 아이 사이에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친자획립소송에서 상대방이 아이의 생부로 판결될 경우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동시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수행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게되고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상

대방이 아이의 임신과 출산 당시 둘 다 미혼자로서 동거했다는 사실, 출생신고서에 상대방이 아이의 생부로 명명됐는지 여부, 아이 출생 이후 상대방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한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맡아 생활했었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친자획립 판결과 그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급 명령도 받으리라 불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상대방이 아이의 생부임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용자	재 용자
• No Credit	• 낮은 이자율
• No Cost	• Cash-Out
2. 3차 용자	Home Improve Loan
• Up to \$100,000	• \$25,000
운영 멤버 Poger (213) 882-2971 오픈 페더	B.(213) 252-1040 Brian 주 Poger (213) 882-2972 오픈 페더

California Trusted Funding  
2250 Wilshire Bl., #1501, L.A., CA 900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